##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숭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32

발의연월일: 2021. 1. 12.

발 의 자 : 황보승희 · 권은희 · 이 용

김병욱 • 서범수 • 양금희

전봉민 · 정동만 · 조태용

태영호 · 한무경 · 허은아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을 18 세 이상인 사람에게 부여하면서도, 그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인 사람에게 부여하고 있음.

피선거권 연령 하한을 25세로 설정한 해당 규정은 1994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이 이루어진 바없는데, 당초 피선거권 연령 기준이 마련될 당시에 비하여 국민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고 정치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선거권 연령의 하한을 낮추어 청년 세대의 참정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 참 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법률 제 호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전단 중 "25歲"를 각각 "19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피선거권) ① (생 략)	제16조(피선거권) ① (현행과 같
	승)
② 25歲 이상의 國民은 國會議	② <u>19</u>
員의 被選擧權이 있다.	
③ 選擧日 현재 계속하여 60日	③
이상(公務로 外國에 派遣되어	
選擧日전 60日후에 귀국한 者	
는 選舉人名簿作成基準日부터	
계속하여 選擧日까지)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住民으로서	
<u>25歲</u> 이상의 國民은 그 地方議	<u> 19세</u>
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	
의 被選擧權이 있다. 이 경우 6	
0日의 期間은 그 地方自治團體	
의 設置·廢止·分割·合倂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	
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